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언론과 언론중재

이택휘

서울교대 교수 · 중재위원

우리는 최근 거대한 국가적 변모과정 속에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폐쇄사회로부터 개방사회로, 그것도 모든 것이 동시에 「열리는 사회」로 지향하는 광범위한 변동을 겪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추진된 급속한 산업화 정책의 결과, 한국사회는 현대적 산업사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현대적 산업사회에로의 전환은 경제영역의 성장에 대응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성장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남았다. 이렇게 되자 그 동안 유보되었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사회적 배분 및 복지에 대한 요구 등이 밀물처럼 넘쳐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미에 와서 한국의 현대정치사는 또 한번 엄청난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와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의 언론은 제 2공화국시대 이래 공전의 언론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신문, 방송, 각종 정기간행물 등 우리나라의 언론매체들은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자유로운 보도활동과 논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조치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한국의 언론은 이제 환경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에 놓여 있다. 한편, 지난 1987년 10월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언론사의 노조운동도 지나칠 수 없는 변모의 하나이다. 언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공정보도를 슬로건으로 내건 언론사 노조는 현재 43개에 이르고 1988년 11월에 설립된 언노련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언론사의 노조는 임금조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편집권의 독립을 위한 노사협상도 추진해오고 있고, 편집국장의 직선제를 채택한 언론사도 있다.

그런데 언론매체의 양적 팽창은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부작용도 남아 사이버 언론 및 사이버 기자들의 폐해와 황색언론의 영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언론 스스로가 사이버 기자들을 추방하고 엄격한 윤리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언론인의 윤리란 「사회의 공기로서는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범의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언론인의 윤리는 언론자유와 신장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자유의 신장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수반됨을 뜻한다.

더구나 사회적 공기로서는 언론매체의 자유로운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준엄하게 수반됨은 물론이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심화된 갈등을 통합으로 변환시키는 윤리적 지도성을 다양하게 나타내주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언론은 자유에 부응하는 책임 또한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스스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중요성 못지 않게 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 대중매체로서의 언론이 지닌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언론매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그것은 민주적 공동체의 운영에서 요청되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도로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와 첨예화 되어가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그러한 자율적 규제로는 조정될 수 없는 언론침해의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나약한 개인이나 집단이 언론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때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사법적 처리에 의뢰하여 구제를 받으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간소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의 분규를 중재, 조정하도록 하는 「사법적 결정의 전치제도」가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이미 폐기된 「언론기본법」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기본법이 폐기되면서도 언론중재제도는 오히려 그 조직을 강화하여 존속케 한 것은 언론자유와 신장에 따른 언론침해의 증가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여 자유언론의 창달과 그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에 와서 3월말까지의 중재신청접수는 17건으로서 1988년 이전에 비하여 중재신청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기간행물의 양적 팽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가 그 주된 기능이며, 시정권고 및 관련문제에 관한 연구가 그 부차적 기능으로 되고 있다. 시행된지 8년을 넘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아직도 미정착의 단계에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언론기관의 근거 없는 권위주의적 타성과 인격권, 사생활보호권 등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미흡, 언론침해의 피해자들의 일상적인 체념, 제도적 미비, 그리고 중재제도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화와 민주화의 대전환기에서 언론의 자유는 그 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언론은 양적 팽창보다도 질적 향상에 정열을 말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언론침해사례는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언론중재제도의 이용은 그러한 갈등의 해소에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의 기능을 점차 확대시켜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책임 있는 자유언론과 양식 있는 다수의 시민들의 인식에 달려 있는 것이다.